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7월 23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0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01. 16) 상정, 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21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01.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권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개정안은 배타적발행권자나 출판권자가 표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도록 규정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5. (생략)	제138조(벌칙) ————— ——— ——— 1. 2.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142조(과태료) ①·② (생략) <u><신설></u>	4. 5. (현행과 같음) 제14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58조제3항¹⁾에 따르면 배타적발행권자는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자의 표지²⁾를 하여야 하고, 제63조의³⁾는 출판권자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음. 이를 위반하는 자는 제138조⁴⁾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배타적발행권자 및 출판권자의 표지의무 관련 규정의 성격은 저작권자와의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한 임의규정⁵⁾에 해당하여 이를 위반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상 의무 위반인데, 이러한 계약상 의무

- 1) 「저작권법」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③ 배타적발행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법 제5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에 수록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제의 대상이 외국인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및 맨 처음의 발행연도의 표지
 2. 복제의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일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표지 및 저작재산권자의 검인
 3. 배타적발행권자가 복제권의 양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의 표시
- 3) 「저작권법」 제63조의2(준용)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 4)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5) 1957년 저작권법 제정시 강행규정으로 출판권자의 표지의무 조항 신설 ⇒ 1987년 개정시 임의규정으로 전환 ⇒ 2011년 개정시 책자 형태 외의 발행도 포함하는 배타적발행권을 신설하여 동일한 의무를 규정(임의규정 형식 유지)

위반의 경우 그 자체로는 형사법 적용이 필요할 만큼의 법익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 따라서 동 표지의무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개정안은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특히 개정안은 성명, 최초 발행연도, 검인 등의 표지를 통해 배타적 발행권자나 출판권자가 발행량을 속이는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한다는 현행법의 입법목적은 유지하면서도, 경미한 위반행위를 비범죄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표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례로는 「전기공사사업법」 6),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7) 등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6) 「전기공사사업법」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박정하 위원장)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